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도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78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18일

발 의 자 : 송도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상훈, 신정호, 김제리,
김소양, 최기찬, 이정인,
김경우, 오현정, 강동길
의원 (9명)

1. 제안 이유

- 교통문화교육원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,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·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역량 향상과 생활 편의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.
- 하지만 조례 상 휴관일이 1월 1일, 설날과 그 전후일, 추석과 그 전후일, 공직선거일로만 정해져 있어 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월 2회 추가로 휴관하고 있는 실정임. 따라서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휴관을 명문화

하여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임.

2. 주요골자

가.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
조항 신설 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
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영의 원칙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원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·제4호·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운영의 원칙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.</u></p>